

현대차의 기막힌 둔갑술 “내가 산 차는 처음부터 헌차였다”

현대자동차가 헌차를 새차로 속여 판 혐의로 영업사원이 사기죄로 구공판(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현대차가 영업사원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측 법무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공판기소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1일 성남지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1차 형사재판이 열렸으며, 피고측 변호사의 사임과 재선임 과정에서 2번이나 공판이 연기돼 6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차를 수리까지 해놓고 고객엔 ‘쉬쉬’ 올 피해 30건중 ‘사기고발’ 6건... 오늘 2차 공판 영업사원 불법행위 은폐위해 회사가 변호나서

경기 성남에 사는 유삼순씨(51)는 지난해 6월 구입한지 18개월 된 투산을 무상보증기간 내 점검을 받기 위해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의 새차가 처음부터 헌차였다.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다. 라디에이터 그릴 및 본넷 전체가 통째로 교체되고 도색 처리가 된 흔적이 있어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것.

유씨는 정밀 진단을 위해 자동차성능검사소에 차량 진단을 의뢰했다. ‘조잡하게 처리된 실리콘과 도색 상태만 봐도, 수리한 차가 분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피해자 유씨는 “수리한 적이 없는데도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데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현대자동차 측이 처음부터 헌차를 새차로 속여 판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결과 헌차로 밝혀져 = 지난달 26일 박병일 신성대 자동차학과 교수(자동차 정비부문 최초 명장)도 “이중 작업을 한 것으로 볼 때 피해 차량은 생산 공장에서 수리한 것이다”라며 “열처리 가안돼 도색이 벗겨져 나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새 차로 판매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내져 생산 때처럼 보이게 수리할 작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순정품 시리즈부품 시리얼 넘버가 시중출고 날짜와 안 맞는 점 △새차의 경우 볼트를 조이고 나서 도색을 해 깨끗한데 반해 이차는 공구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점 등 신차가 아닌 증거를 제시했다.

유씨는 지점장에게 전화해 항의했지만 꾀꾀도 안했다. 헌차를 새차라고 판 현대차 성남 중부지점 판매사원 조모씨는 오리발을 내밀었고 임모 지점장은 칠곡출하장에서 탁송한 차량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인도해 수리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씨의 차에 대해 문의하면 “2005년 9월 29일 칠곡출하장에서 성남중

부지점으로 탁송한 차량”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칠곡출하장의 탁송사(당시 현산물류, 덕영기업) 직원은 “전시차에 같은달 22일 이미 동대문역대리점에 전시차로 출고한 차량”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대문역대리점 이전에 회사 직영 진천지점으로도 출고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타 지점의 전시차는 실소유자가 나타나면 가져올 수가 있어 동대문역대리점에 소유자가 나타났다는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칠곡출하장에서 성남 중부지점으로 차를 장비 탁송해서 가져 왔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은 허위인 셈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하 자소연) 이정주 회장은 “고객을 속인 영업사원들의 비양심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현대자동차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시차라는 사실 말 못했다” 공격한 변명 = 임 지점장은 처음에는 “우리도 전시차임을 몰랐다”고 했으나 이미 그 전에 칠곡출하장에 전화해 정확한 출고일을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출하장에 날짜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 묻자 임 지점장은 “조씨 말로는 할인금액을 맞춰주다 보니 깜빡하고 고객에게 전시차인 것을 말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조씨가 또 사실을 숨긴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조씨는 본사에는 전시차 합인을 고지하고 정작 유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자소연 이 회장은 또 “현대차그룹의 전시차에는 단순 전시차 뿐 아니라 재고차, 선출고차, 반품차, 수리차까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정준모 변호사는 “영업사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파는 차가 전시용 차였고 선출고 된 차였다는 것을 알고도 고객에게 고지 안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피해자 유삼순씨가 지난해 7월부터 양재동 현대본사와 성남중부지점 부근을 시간이 날 때마다 차로 돌아다니며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된다”며 “이는 의도적 고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측은 이와 같은 사기판매가 영업사원 개인의 비리이며, 수많은 지점과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변명해 왔다.

조씨가 구공판 기소되자 현대자동차는 공공연히 그룹 법무팀변호사를 피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자소연이 이 사실을 알고 법무팀의 담당변호사에게 전화해 사기판매 증거가 명백한 영업사원에게 회사차원의 지원이 웬말이냐고 항의하자 이모 변호사도 “영업사원의 잘못을 모르고 수임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사임하자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과거 현대차그룹 법무팀 출신의 이모 변호사였다. 이와 관련, 반론을 듣기위해 현대자동차 홍보실측에 여러 번 접촉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올들어 9월까지 자소연에 접수된 피해사례 30여건 중 사기판매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은 6건이다.

/김중훈 기자 fun@



현대차가 신차라고 판매한 차량에 홀로그램(점선 안)이 부착돼있다. 홀로그램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판매 부품에만 붙어 있고 공장에서 출고되는 신차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부품 교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